제정 1973. 7. 1. 조례 제 8호 개정 1974. 1. 1. 조례 제 123호 개정 1976. 12. 26. 조례 제 172호 개정 1976. 12. 20. 조례 제 194호 개정 1979. 5. 1. 조례 제 342호 개정 1979. 7. 24. 조례 제 342호 개정 1979. 7. 24. 조례 제 347호 개정 1979. 12. 28. 조례 제 347호 개정 1980. 3. 1. 조례 제 368호 개정 1980. 5. 1. 조례 제 378호 개정 1980. 5. 1. 조례 제 453호 개정 1980. 7. 3. 조례 제 453호 개정 1981. 1. 19. 조례 제 453호 개정 1981. 8. 13. 조례 제 453호 개정 1981. 9. 23. 조례 제 453호 기정 1981. 9. 23. 조례 제 453호 일부개정 2004. 17. 7. 조례 제1895호 개정 1981. 8. 23 제 제 458호 개정 1982. 7. 14. 조례 제 548호 기자정 1982. 7. 14. 조례 제 548호 기자정 1983. 8. 8. 조례 제 467호 개정 1984. 10. 16. 조례 제 548호 기자정 1984. 10. 16. 조례 제 700호 기자정 1984. 10. 16. 조례 제 731호 기자정 1985. 10. 15. 조례 제 731호 기자정 1986. 3. 19. 조례 제 735호 개정 1985. 10. 15. 조례 제 735호 가정 1985. 10. 15. 조례 제 735호 가정 1985. 10. 15. 조례 제 735호 가정 1988. 11. 12. 조례 제 888호 기자정 1988. 13. 조례 제 735호 기자정 1988. 11. 12. 조례 제 885호 기자정 1988. 11. 12. 조례 제 885호 기자정 1989. 4. 25. 조례 제 921호 가정 1989. 4. 25. 조례 제 922호 가정 1989. 3. 30. 조례 제 922호 가정 1989. 4. 29. 조례 제 944호 기자정 1989. 7. 20. 조례 제 1023호 기자정 1989. 4. 29. 조례 제 945호 기자정 1989. 4. 29. 조례 제 942호 기자정 1989. 1. 1. 10. 조례 제 1023호 기자정 1992. 10. 1. 조례 제 1023호 기자정 1992. 10. 1. 조례 제 1023호 기자정 1992. 10. 1. 조례 제 1023호 기자정 1992. 11. 28. 조례 제 1023호 기자정 1993. 1. 8. 조례 제 1023호 기자정 1994. 2. 12. 조례 제 1023호 임부가정 2012. 12. 20. 조례 제 33502호 인부가정 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38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와 제156조제 1항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에 따라 안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30., 2025. 5. 16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3. 2., 2025. 5. 16.>

- 1. "급수설비"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 분기(分岐)하여 설치한 급수관(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), 계량기, 저수조, 수도꼭지, 그 밖의 급수에 필요한 기구(器具)를 말한다.
- 2. "급수공사"란 급수설비의 신설, 개조,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.
- 3. "특수가압시설"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.
- 4. "수도사용자 등"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,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.
- 5. "중수도"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·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6. "구경별 기본요금"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안양시장(이하 "시 장"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 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.
- 7. "호(戶)"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단위를 말한다.
- 8. "세대(世帶)"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.
- 9. "주계량기"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로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에 호별 분리계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별 계량기의 통합 계량 되는 주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. 이때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 우 호별계량기를 주계량기로 본다.
- 10. "호별·층별계량기"란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의 주계량기 이후에 호별·층별 분리계량이나 업종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도계량 기를 말한다.
- 11. "노후주택"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.
- 12. "기초생활수급자"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.
- 13. "차상위계층"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

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- 14. "소득인정액"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환산한 금액을 말 하다.
- 15. "옥내급수설비"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(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) 및 옥내급수관(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)을 말한다.
- 16. "개량"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 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.
- 제3조(급수구역) 급수구역은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.

제4조(급수설비의 구분)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전용급수설비: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
- 2. 공용급수설비: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
- 3. 소화용급수설비: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

제5조(급수공사의 구분)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신설공사: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
- 2. 개조공사: 급수관 구경변경, 증설, 위치변경,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
- 3. 수선공사: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 하는 공사
- 4. 철거공사: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

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

제6조(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)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

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, 호별로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 또는 층별로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·층별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한다. <개정 2017. 11. 16., 2025. 5. 16.>
- 제7조(호별·층별계량기의 설치 등)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
 - 2. 다가구주택
 - 3.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
 - 4.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 건축물
 -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층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신설 2025. 5. 16.>
 - 1.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
 - 2.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 건축물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별·층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(空地)에 설치한다. 이 경우 주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④ 호별·층별계량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각 호별·층별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. 이 경우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⑤ 호별·층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·층별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미리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⑥ 호별·층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며,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. <신설 2025. 5. 16.>

[제목개정 2025. 5. 16.]

- 제8조(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)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공용급수설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9조(공사의 시행)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. 다만,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에서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자(이하 "시공업자"라 한다)에게 공사를 위탁·시공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「수도법」 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④ 급수공사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서류를 제출하고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도로의 굴착·포장,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0조(준공검사)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문서로 준공검사 를 신청하고,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) ①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주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주계량기 이후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옥외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.
 - ④ 제3항 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. 다만, 호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호별계량기만 관리한다.
 -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관 분기

지점부터 건축물 외부 1미터 이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하고, 이후부터 건축물 방향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. 다만, 주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한다.

- 제12조(공사비의 산출방법)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, 시공비, 도로복구비, 설계수수료, 준공검사 수수료,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등의 합계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.
 -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.
- 제13조(공사비의 선납) ① 급수공사를 승인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,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수도요금과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.
 - ⑤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제14조(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)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단독 수용가는 제외한다.
 -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공사의 설계, 제11조에 따른 공사비 부담, 제12조에 따른 공사비 산출과 제13조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 등 규정에 따른다.
- 제15조(급수공사의 직권시행)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, 수선, 철거,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,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과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.

- 제16조(공사시행에 관련된 책임)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.
 -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 -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, 하자확인과 시공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, 상장 유가증권, 국 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,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장 급수

- 제17조(수도의 사용)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 - ③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.
- 제18조(수도사용자 등의 신고)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1.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전하고자 할 때
 - 2. 급수설비의 파손, 누수,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
 - 3. 제27조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
 - 4.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
 - 5.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을 때
 - 6. 화재로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(사설소화전 제외)
 - 7.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(사설소화전 제외)
 -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

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,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- 제19조(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의무·책임)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·관리하여 상수도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과 계량기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,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.
- 제20조(급수설비에 대한 권리·의무의 승계) ①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·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으며,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권리·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·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매·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21조(급수정지와 사용제한)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22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.
- 1.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
- 3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
-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.

제4장 요금과 수수료

- 제23조(수도요금의 징수)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1의 상수도 요금 요율표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, 별표 1의 요율은 요금 조정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상수도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7. 17.>
 -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.
- 제24조(수도요금) ① 수도요금은 별표 1의 상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. <개정 2023. 7. 17.>
 -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,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.
- 제25조(업종의 구분)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수도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. 다만,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량을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. 다만,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제26조(수도요금의 조정)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,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수도사

- 용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 계량하거나, 수시로 사용한 양을 일괄로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부득이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수도사용량의 인정 등) ① 수도사용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으로 한다.
 - 1.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
 - 2. 수도사용량이 불명확할 때
 - 3.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때
 - 4.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
 - ② 삭제 <2015. 11. 6.>
 -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호(戶)당 또는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, 나머지 사용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.
 - ④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수도사용량은 총사용량을 호수 또는 세대수로 나는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한다.
- 제28조(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) 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을 정정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 한다. 이 경우 다음 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(수도계량기 시험기관에 납부한 수수료 등)은 신청인이 부담하며, 비용은 다음 달 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. 다만,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.
- 제29조(납부기한과 징수방법) ① 수도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 납부로 하고, 납

- 부기한은 해당 월 말일로 한다. 다만, 옥내 누수로 발생한 수도요금은 4개월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.
- ③ 급수의 중지, 급수설비의 폐전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제30조(연체금 및 독촉)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연체금 = 미납요금 × (2/100) × (연체일수/달력 일수)

- (단,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2/100으로 한다.)
- 제31조(납부고지)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,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하여 전자고지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.
 - 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,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31조의2(납부방법) 수도요금은 현금이나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 카드·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8]

- 제32조(임시급수)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.
- 제33조(운반급수와 요금) ① 시장은 급수구역 여부와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 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

- 야 한다. 다만,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예외 로 한다.
- 제34조(수수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 자로부터 각각의 수수 료를 징수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1. 제9조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
 - 2.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
 - 가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,000원
 - 나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,000원
 - 3.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
 - 가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,000원
 - 나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,000원
 - 4. 제28조제4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
 - 가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.000원
 - 나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,000원
 - 5. 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
 - 가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,000원
 - 나.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,000원
- 제35조(수질검사)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 사를 의뢰할 수 있다.
 -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하여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수질검사 범위는 「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1.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저수조 수질검사
 - 2.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3조 별표 7에 따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
 - ④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시장은 검사를 완료하고,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8.>
- 제36조(수도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도요금과 수

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29, 2021. 12. 30., 2023. 5. 22., 2023. 7. 17., 2025. 5. 16.>

- 1.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
- 2.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(故意)가 아니고, 누수지점이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 등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
- 4. 공공용소화전의 수도요금
-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와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안양시 동일 주소지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세대당 월 10 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요금
- 6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대상, 감면회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- ③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수도요금 부과 시 별표 1 상수도요금 요율표 중 일반용 최초단계요율(제1단계)을 적용한다. <신설 2018. 12. 28., 개정 2025. 5. 16.>
- 제37조(수도요금의 할인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.
 - 1.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
 - 2.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호별 사용량 검침과 수도 요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.

제5장 관리

제38조(급수설비의 검사와 조치)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

- 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에 대하여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(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등)를 할 수 있고,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 자나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 정 2025. 5. 16.>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 설비의 세척·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, 3, 2.>
- ③ 시장은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.>
- ④ 제3항에 따라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㎡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3. 2., 2025. 5. 16.>
- 1. 공동주택 :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m²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2. 단독주택: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㎡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.
- 3. 다가구주택: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환산 연면적이 130㎡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,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.
- 4.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,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.
- 5. 공용배관: 주거전용면적(또는 환산연면적) 130㎡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, 동일한 단지 내 130㎡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㎡ 이하 세대수의 50%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.(단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은 제외)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슨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2., 개정 2025. 5. 16.>

-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
- 2.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⑥ 이 조례에서 정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, 재개발 및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<신설 2020. 3. 2.>
- ⑦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3. 2.>
- 제39조(정수처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.
 - 1. 수도요금, 수수료, 공사비,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
 - 2. 수돗물을 도용(盜用)한 자
 - 3.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
 - 4.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
 - 5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
 - 6.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
 - 7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
 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5. 16.>
 - 1.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 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.
 - 2.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, 우편, 휴대폰 문자, 전화, 전자고지(이메일) 등의 방법으로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수수 료를 징수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④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 층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

-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-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이후 6개월까지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5. 16.>
- 제40조(포상금 지급)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- 제41조(수도계량기의 훼손, 망실 등에 대한 책임)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무단철거,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한다. 다만,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 - ② 제1항의 비용수납은 다음 달 분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.
- 제42조(과태료 등) 사기(詐欺)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이나 원인 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설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 하는 것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5. 16.>
- 제43조(급수설비의 철거)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설한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.
 -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.
- 제44조(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) ① 시장은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, 고지서송달 등 징수업무

- 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하다.
- ③ 위탁업무의 범위, 위탁수수료 산정, 업무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45조(이의신청) ① 수도요금 등 납부금의 조정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제46조(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징수의 준용)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,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1. 16., 2018. 12. 28., 2023. 7. 17.>

[제목개정 2023. 7. 17.]

- 제47조(소멸시효)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<개정 2025. 5. 16.>
- 제4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 소장에게 위임한다.
 - 1.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
 - 2. 제7조의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
 - 3. 제8조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
 - 4. 제9조의 공사의 시행
 - 5.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
 - 6. 제14조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

- 7. 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
- 8. 제17조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
- 9. 제18조의 신고
- 10. 제21조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
- 11. 제22조의 급수중지와 폐전
- 12. 제23조의 수도요금의 징수
- 13. 제25조의 업종의 구분
- 14. 제26조의 수도요금의 조정
- 15. 제27조의 수도사용량의 인정
- 16. 제28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
- 17. 제29조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
- 18. 제30조의 연체금
- 19. 제31조의 납부고지
- 20. 제32조의 임시급수
- 21. 제33조의 운반급수와 요금
- 22. 제34조의 수수료
- 23. 제35조의 수질검사
- 24. 제36조의 수도요금 등의 감면
- 25. 제37조의 수도요금의 할인
- 26. 제38조의 급수설비의 검사와 조치
- 27. 제39조의 정수처분
- 28. 제42조의 과태료 등
- 29. 제43조의 급수설비의 철거
- 30. 제44조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
- 31. 제45조의 이의신청

제4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4. 11. 14. 조례 제2581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1. 6. 조례 제268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요금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2016년 이후 사용요금 규정은 매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7. 11. 16. 조례 제289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2. 28. 조례 제302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9. 7. 29. 조례 제31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. 조례 제318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30. 조례 제3379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30. 조례 제3391호>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5. 22. 조례 제3502호,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17. 조례 제35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9. 27. 조례 제367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요금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된 업종별 사용요금의 적용금액은 해당 연도의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5. 5. 16. 조례 제375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4. 9. 27.>

상수도요금 요율표(제24조제1항 관련)

1. 구경별 기본요금

| 구경별 (mm) | 15 | 20 | 25 | 32 | 40 | 50 | 80 | 100 | 150 | 200 | 250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금액 (원) | 600 | 1,060 | 1,660 | 2,910 | 3,220 | 5,040 | 9,910 | 16,140 | 31,480 | 44,720 | 74,010 |

2. 업종별 사용요금

| 업종별 | 사용량(m³/월) | 적용금액(원) | | | | |
|------|---|---|-------|---------|--|--|
| 경상된 | 가공당(III/될)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부터 | | |
| 가정용 | m'당 | 550 | 650 | 750 | | |
| 일반용 | 0 ~ 100 101 ~ 300 301 ~ 1,000 1,001 ~ 2,000 2,001이상 | 1,070 1,310 1,470 1,680 1,870 | | | | |
| 대중탕용 | 0 ~ 1,000 1,001 ~ 1,500 1,501 ~ 2,000 2,001이상 | 900 1,160 1,420 1,680 | | | | |

[별표 2] <개정 2024. 9. 27.>

업종별 구분표(제25조제1항 관련)

| 업종별 | 구 분 내 용 |
|-------|--|
| 가 정 용 | (가)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(나) 담배・연탄・양곡・문방구・지물・철물점 등의 소매점 (다)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(라) 신문보급소, 지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과 지압업소 (마) 기숙사 (바)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단, 급식・요양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 제외) (사)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・경비실・공동화장실・노인정・음수대・운동시설(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)등에 대한 급수 (아)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(자)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 주택과 고시원 (차) 가정어린이집 |
| 일 반 용 | (가) 가정용, 대중탕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 (나) 수도시설이용 등에 따른 퇴수・세척용수(단 최종단계 요율적용) (다)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(단,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) (라) 수도시설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(퇴수・세척용수포함) 및 급수치사용량(단, 최종단계 요율적용) (마) <삭 제> (바) 군부대, 교도소(최종단계요율(4단계) 적용) |
| 대중탕용 | (가) 공동의 목욕장시설(공동의 욕조·휴게실·발한실)을 갖춘 목욕장업. 단, 발한실 이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목욕장업 제외 |

[별표 3] <개정 2019. 7. 29.>

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(제42조 관련)

| | 과태료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위반내용 |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|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| 행정처분 |
| 1. 수돗물 도용 (제39조제1항제2호 관련) | -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 50,000원 | • 부정 급수장치 철거 명령 • 부정 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|
| 2.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(제39조제1항제3호 관련) | -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 50,000원 | • 부정 급수장치 철거 명령 • 부정 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 자 고발 |
| 3. 계량기 작동방해, 훼 손, 무단철거 및 망실 (제39조제1항제4호 관련) | -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 20,000원 단, 가정용은 10,000원 | •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•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| 4. 계량기 매몰, 공작물 설치 봉인 파손 | | 10,000원 단, 가정용은 5,000원 | • 원상회복 명령 단,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•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| 5.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(제39조제1항제5호 관련) | -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| 50,000원 | •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•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
| 6. 정수처분 중인 급수 전의 무단사용 | -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2배 | 10,000원 단, 가정용은 5,000원 | ·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|
| 7. 업종 위반 사용 | | |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차액 징수 업종 직권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|